



2005



( )

1.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메이트보험

2. , , ( )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10년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만 15세~(65 -보험기간)세
	전기납	만 15세~ 53세
15년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5세~(65 -보험기간)세
20년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만 15세~(65 -보험기간)세
50세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만 15세~(세만기 -10)세
	15년납, 20년납	만 15세~(세만기 -납입기간)세
	전기납	만 15세~ 38세
55세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만 15세~(세만기 -10)세
	15년납, 20년납	만 15세~(세만기 -납입기간)세
	전기납	만 15세~ 43세
60세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만 15~(세만기 -10)세
	15년납, 20년납	만 15~(세만기 -납입기간)세
	전기납	만 15세~ 48세
65세만기	일시납, 5년납, 7년납	만 15세~(세만기-10)세
	10년납	만 15세~ 54세
	15년납, 20년납	만 15세~(세만기-납입기간)세
	전기납	만 15세~ 53세

3.

월납

4.

배당금이 없음

5.

### 가. 추가보험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만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료 이전까지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출당시까지 발생한 추가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다. 추가보험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인출금액에서 공제한다.

### 나. 공시이율

- (1) 이 계약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조정이율의 차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text{기} = \frac{\quad + \quad}{2}$$

A.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 I : 직전 6개월간 투자 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 비용

- $A_6$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 (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3) ‘(2)’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4) ‘(2)’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2)’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 공시이율 및 추가보험금(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6)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 미만에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1		× 80%	× 70%
1	2	× 90%	× 80%
2	3	× 95%	× 90%

- (7) 공시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3.25%로 한다.
- (8)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라. 선납보험료

- (1)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계산하며, 할인률은 예정이율로 계산한다.
- (2) (1)호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 (3)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예정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한다.

####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바. 무배당 자유로설계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을 무배당 자유로설계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무배당 자유로설계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2) 무배당 자유로설계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사.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

#### 아.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한다.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